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2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김남희·위성곤·김 윤

이기헌 • 백승아 • 황정아

박지혜 · 강준현 · 김문수

전진숙 · 김남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 는 경우가 발생함. 일부 수급자는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음.

이에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법률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평가 액 산정 시 제1항제4호의 이전소득에서 제외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 훈급여금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 전명예수당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의3에 따른 수당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1항제4
	호의 이전소득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
	<u>금</u>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
	<u>훈급여금</u>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